

建設工事調査報告書

建設工事調査計劃

本件은 1954년 1월 1일에 제44회 본회의 제4차 회기에서 제정된 건설부의 건설

本件은 1954년 1월 1일에 제44회 본회의 제4차 회기에서 제정된 건설부의 건설

本件은 1954년 1월 1일에 제44회 본회의 제4차 회기에서 제정된 건설부의 건설

本件은 1954년 1월 1일에 제44회 본회의 제4차 회기에서 제정된 건설부의 건설

本件은 1954년 1월 1일에 제44회 본회의 제4차 회기에서 제정된 건설부의 건설

本件은 1954년 1월 1일에 제44회 본회의 제4차 회기에서 제정된 건설부의 건설

本件은 1954년 1월 1일에 제44회 본회의 제4차 회기에서 제정된 건설부의 건설

建設工事調査特別委員會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1996. 4.

발의자 : 양동복 의원 외 4인

주 문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활동기간 : '96. 5. 2 ~ 6. 30 (60일간)
- 구성인원 : 13명

제안이유

- 집행부에서 발주한 각종건설 관련공사와 민간에 대한 기본적 보조로 지원된 각종사업의 계약관계, 시공실태, 준공후 사후 관리문제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부실여부를 확인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향후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 특히 가뭄대책과 식수원으로 사용키 위해 굴착했던 중. 대형 관정에 대한 현지 실사를 통하여 잘못 발주 및 시공된 사례들을 발췌하여 시정토록 하여
- 건설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 확보와 향후 건실한 건설공사로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

건설공사조사 세부 계획(안)

1. 목 적

- 집행부에서 발주한 각종건설 관련공사와 민간에 대한 기본적 보조로 지원된 각종사업의 계약관계, 시공실태, 준공후 사후관리문제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부실여부를 확인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향후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도록 하고
- 특히 가뭄대책과 식수원으로 사용키 위해 굴착했던 중. 대형관정에 대한 현지 실사를 통하여 잘못 발주 및 시공된 사례들을 발췌하여 시정토록 하여
- 건설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 확보와 향후 건실한 건설공사로 지역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

2. 조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호
-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3. 조사기간 및 장소

- 1996. 5. 2 ~ 6. 30 (60일간)
- 특위에서 정하는 장소 (사무실 및 현장)

4. 조사대상

- 대상관련기관 : 군본청 및 사업소, 읍.면, 민간자본보조단체 및 개인
- 대상공사범위 : 1995. 1. 1 ~ 1996. 4. 30일 이전에 및 준공처리된 각종건설 관련공사
(추후 구체적 대상공사는 특위결정으로 확정함)

5. 특위구성인원

- 의회 의장을 제외한 13명 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고 위원장과 간사를 반장으로 하여 2개반 편성

6. 조사요령

- 조사대상 사업조서 징구
- 서류조사 및 시공현장 확인
-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또는 민간자본보조단체 및 관계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청취 (질의 응답 포함)
- 위법부당사례 확인서 징구
- 기타 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과 의회사무과 협조 의뢰
- 조사진행은 공개원칙이나 특위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음.

7. 조사결과처리

-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조치하고 위법부당한 사례는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첨부 군수에게 처리토록 이송

8. 소요경비

-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변상 및 필수 소요경비 지급